

방각본(坊刻本)의
개관 기원으로서의
역서(曆書) 인출 전통 고찰
안성판방각본을 중심으로

김한영

안성참빛아카이브 대표, 미학 전공

hahsoh@empal.com

- I. 머리말
- II. 김태영의 전언
- III. 역서의 사조와 안성판 역서
- IV. 맺음말: 역서 인쇄로부터 비롯된 안성판방각본의 개관 기원

I. 머리말

이 글은 경기도 안성지방에서 생산된 안성판방각본(安城板坊刻本)이 어떤 계기로 인해 개관되었는지에 대해, 전언과 사료를 근거로 하여 그 연원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우선 매년 연례적으로 안성에서 지방관으로 발행했던 역서(曆書)의 판각 인출(印出) 사실에 주목했다.

안성지방관 역서의 방각(坊刻)을 추적 검증하기 위해 필자는 한 지역사 기록자의 전언에서 출발하여 관련 사료들을 두루 검토한 후, 역서 인출과 방각본 출현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했다. 아울러 과거 출판문화가 취약했던 것으로 알려진 안성지역에서 조선 후기 어느 시점에 이르러 방각본 생산이 성행한 것은 그에 앞서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된 것이 분명한 역서 인출의 전통이 그 온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논증했다. 이를 위해 역서 인출의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 김태영의 전언을 소개한 후, 조선 중후기 안성지역의 역서 간행 유패를 문헌연구를 통해 입증하고자 했으며, 이로써 필자의 논지를 구체화하는 연구방법에 기초했다.

이 글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곧 안성지역의 역서 인출 문제와 방각본의 개관 기원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의된 바 없는 몇 가지 새로운 연구과제를 함축하고 있기도 하다. 안성판 역서의 형태적·서지적 특징에 대한 조사, '방각본으로서의 안성판 역서'의 의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조선 후기 지방관 역서의 사적·공적 발행 실태의 규명 등이 그러하다. 이 주제들 또한 더불어 고찰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글의 연구 목적이 안성판본의 개관 기원과 계기, 그리고 역서 인출과 방각본 개관의 상관관계에 주안점을 둔 것이기에, 다음 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이 글이 안성판방각본의 남상(濫觴)에 관해 새로운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논의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나, 학술적 가치와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실증적·심층적 접근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문제는 사료와 문헌, 특히 안성지역사 관련 기록이나 안성판 역서 실물 자료의 미비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는 하나, 연구 환경의 제약이 이 글의 약점을 가릴 구실은 아닐 것이다. 이는 이어질 연구의 과제인 동시에, 후속

작업에서 한층 진전된 성과를 기대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II. 김태영의 전언

일제강점기 안성지역에서 살았던 한 선인은 과거 조정에서 관원을 파견하여 한지 생산지인 안성 기좌리에 역서인쇄소를 설치하고 역서를 인쇄하여 전국에 배포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와 같은 역서 인출설 또는 관상감인쇄소 설치설의 출처는 추수(秋水) 김태영(金台榮, 1895-1979)¹⁾이다.

그는 1923년부터 1940년까지의 《동아일보》 기사, 1925년의 『안성기략』, 그리고 1956년의 미간행 수고(手稿)²⁾를 통해 안성의 종이제조 및 역서 인쇄와 관련한 여러 편의 기록을 남겼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전문연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의 글 역시 학술적 신뢰성을 결여한 단편의 신문기사거나 잡문 형식이긴 하나, 당대 안성의 여러 가지 사실을 김태영만큼 세세하게 서술한 기록자가 없는 실정을 감안하면 그의 전언은 그 자체로 새겨볼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과거 안성에서 방각된 서책들, 즉 안성판방각본 간행의 기원과 유래를 추찰(推察)하는데 김태영의 전언이 의미 있는 시사를 던져줄 수 있는 논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소상히 검토하여 사실을 가리고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안성지(安城紙)의 생산 및 안성의 역서 인쇄와 관련한 그의 전언을 발표된 연대순으로 살펴보자.

① 京畿道 安城郡 寶蓋面 其佐里에서 生産하는 安城白紙는 其 製造의 由來가

- 1) 본디 경북 청도 태생으로 경성의 보성중학을 졸업하고 “기미년(1919) 봄 우연한 인연으로 몸을 백성(白城=안성) 일우(一隅)에 유(留)하게” 된 외지인이다. 이듬해인 1920년 《동아일보》가 창간된 직후 안성분국의 기자로 근무했고, 그해 12월에는 분국장이 되었다. 안성분국은 1923년 지국으로 승격되었는데, 지국장 역시 그가 맡았다. 그는 지국장을 하면서 부록을 포함해 230여 쪽에 달하는 분량의 『안성기략(安城記略)』(1925)을 집필하여 이를 신식 활판으로 간행한 바 있는데, 치밀한 기록정신이 돋보이는 이 근대 인문지리지의 안성지역사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2) 육필로 남긴 ‘추수 김태영 술 안성문화금석관’을 말한다. 이 수고의 집필시점은 정확히 알려진 바 없으나, 안성읍 금송당 서점이 주식회사로 변경되는 동시에 활판인쇄업을 겸영한 1956년의 사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이 유고가 수록될 예정이었던 『안우(安友)』 창간호가 1956년 9월 25일 발행된 점으로 볼 때, 1956년 전반기에 집필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 「수고」.

久遠하고 紙質이 良好하여 一般의 需要가 多한 바 [...]3)

② 紙類는 寶蓋面에서 生産되나 [...] 同面[보개면] 其佐里에서는 古書籍(千字文, 童蒙先習, 通鑑, 其他)의 木版印刷가 盛行되고 [...]4) (()는 원문, []는 필자)

위에서 보는 것처럼, 그가 과거 안성의 한지 생산과 인쇄출판에 대해 최초로 《동아일보》에 송고한 초기의 기사 ①이나 ②의 『안성기략』에는 안성에서 백지를 제조했고, 이를 이용하여 『천자문』, 『동몽선습』, 『통감』 등 고서적을 대상으로 한 목판인쇄가 행해졌다는 내용뿐이다. 여기에는 역서 인출에 관한 언급은 물론이고 역서지(曆書紙)에 관한 내용도 보이지 않는다. 역서와 관련된 내용은 주로 1929년 이후의 기사에 나타나는데, “시헌력 쓸 때부터 역서 용지를 제조” 공급하여 기좌리가 “조그만 촌락으로 언제나 풍성”했음을 전한 아래의 기획기사 ③은 안성판방각본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담고 있다.

③ 경기도 안성군 보개면 기좌리 불현리 등 두 동리에서는 지금으로부터 277년 전 孝宗 4年[1653]에 종래의 曆書(를 폐지하고 비로소 歐羅巴 사람 湯若望의 時憲曆을 나라에서 사용하기로 된 때부터 역서 인쇄용지를 만들기 시작하여 지금부터 이십여 년 전 光武 隆熙 시대에 이르기까지 매년 역서 용지를 거액으로 산출하고 兼하여 과거에 쓰는 鑑試明紙와 구서적을 인쇄하는 종이 [...] 를 만들어서 전국에 널리 판로를 두고 [...] 매년 역서를 인쇄할 시기가 되면 曆官이 累萬의 돈을 가지고 이 동리에 이르러 종이를 사 모으게 되어 동리 사람들은 돈더미 위에 올라앉은 것 같이 되고 [...] 이 밖에 그 동리에서는 옛날부터 四書, 三經, 通鑑, 童蒙先習, 千字文 등 구서적을 목판으로 인쇄하여 전국에 팔아왔다 한다.5) ([], 강조점 필자)

④ 寶蓋面 其佐里 佛峴里는 白紙를 産出하여 古來 曆書紙로 供給하다가 時勢의 變遷을 隨하여 洋紙 和紙의 壓頭로 生産이 激減하였든바 [...]6) (강조점 필자)

기좌리의 방각본 인쇄를 소개하고 있는 ③의 기사에는 ②에서 말한 『천자문』, 『동몽선습』, 『통감』 외에도 사서와 삼경7)도 인쇄했다고 밝히

3) 「有望한 安城紙」, 《동아일보》, 1923년 2월 12일자.

4) 『안성기략』, 152.

5) 「曆書紙로 賞用된 安城郡의 朝鮮紙」, 《동아일보》, 1929년 7월 4일자; 7월 6일자 연재 기사.

6) 「馬糞紙 相當히 將來有望」, 《동아일보》, 1931년 2월 11일자.

7) 지금까지 알려지거나 실물로 확인된 안성판방각본은 『심정전』 외 고전소설이 10여 종이고, 『동몽초독』 등 비소설류가 십수 종에 달한다. 인용문이 말한 칠서(七書)의 안성판방각본 인출은 지금까지 학계에 전혀 보고된 바도, 논의된 적도 없다. 실물로 확인되지도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해서 김태영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

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효종대부터 역서 인출지를 제조하기 시작하여 대한제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서를 인쇄할 시기가 되던 역관(관상감 관원)이 많은 돈을 가지고 기좌리까지 직접 와서 종이를 매입해 가져갔고 이 종이를 이용하여 역서를 인쇄했다는 내용이다. ⑤는 ④의 기사가 나간 지 3개월 후 최영수⁸⁾가 적재울(=기좌리)의 한지 제조실태를 르포 형식으로 쓴 글이다.

⑤ ‘적재울[=기좌리]’은 [...] 六百餘 人口를 抱擁하는 小部落인바 距今 約三百年 前에 製紙業이 시작되어 古來로 朝鮮紙(白紙, 窓戶紙 等) 產出의 唯一한 產地였든바 李朝 五百年 時代로 國內에서 需用하는 曆書紙 等은 擧皆가 이 ‘적재울’에서 供給되었 다고 傳한다.⁹⁾ ([1], 강조점 필자)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1931년 초반까지의 기사 또는 기록에는 안성에서 백지를 생산하여 사서삼경, 『동몽선습』, 『통감』, 『천자문』, 기타의 목판인쇄를 수행했고, 안성지역에서 생산한 한지를 역서지로 대량 공급했다는 사실만 보일 뿐, 어디에도 과거 안성지역에서 역서를 직접 인쇄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한국시대에 시헌력서 인쇄를 해오던 안성 기좌리’에 정부에서 “역서인쇄소를 두었고, “기좌리에서 백지로 역서를 간행해왔다”는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안성의 한지 생산을 소개한 첫 원고가 송고된 지 15년 이상이 지난 1938-1940년의 기사다.

⑥ 安城郡 寶蓋面 其佐里는 옛날부터 製紙와 木版印刷로 이름이 높은 地方으로 舊韓國時代에 政府에서 時憲曆 印刷를 이곳에서 해오던 歷史 깊은 곳이었으나 [...] 活版印刷가 發達된 뒤로는 이곳의 製紙와 木版印刷가 漸次 衰退하게 되었으므로 [...] ¹⁰⁾ (강조점 필자)

⑦ [...] 安城白紙가 有名하여 政府에서 曆書印刷所를 當地 其佐리에 두고 이곳 白紙로써 [역서를] 刊行해왔다.¹¹⁾ ([1], 강조점 필자)

지을 수 없는바, 이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논하기로 한다.

8) 《동아일보》 안성지국 기사를 역임한 최영수(崔永秀)는 안성의 문인으로 일제강점기에 개인 수필집을 상재하기도 했다. 위 기사도 지국장인 김태영의 지시 또는 재가를 받아 쓴 것으로 보인다.

9) 「馬糞紙 生産地 ‘적재울’ 가 보고», 《동아일보》, 1931년 5월 12일자.

10) 《동아일보》, 1938년 4월 12일자.

11) 《동아일보》, 1940년 6월 25일자. “東亞日報社安城支局長二十年勤續褒彰紀念 安城地

위의 내용은 정부(관상감)에서 역서인쇄소를 기좌리에 설치했다는 것인데 이는 관상감의 분원 또는 직소 형태인 인력소(印曆所)가 기좌리에 설치되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여기서의 처음으로 시현력이라는 구체적 역서명(曆書名)¹²⁾과 구한국시대라는 간행시기도 나타난다. 이로부터 다시 15-16년이 지난 후 집필된 미간행 육필원고에서도 시기는 조선시대였고 이곳에서 간행한 역서의 종류가 시현력이었으며, 중앙에서 관원이 파견되었는데, 기좌리에서 인쇄한 역서의 규모가 전국에 배포할 정도의 분량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⑧ [안성] 其佐里에서는 朝鮮時代に 曆書 時憲曆을 印刷하였으며 [...] 曆書는 民間에서는 任意로 出版할 수 없는 것으로 政府에서 [안성 기좌리에 官員을 派遣하여 全國에서 쓰이는 曆書를 出版하였다.¹³⁾(I, 강조점 필자)

이상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선의 조정이 안성 기좌리에 조정의 관리를 직접 파견하여 역서를 출판할 인쇄소를 이 마을에 설치하고, 예컨대, 함경도 함흥이나 경상도 부산, 전라도 목포 등 조선 팔도에서 소용될 역서를 찍어냈다는 것이다.

김태영은 “민간에서는 임의로 출판할 수 없는 것”으로, 과거 사사로이 찍어내는 행위인 사인사조죄(私印私造罪)를 극형으로 다스렸던 책력(冊曆: 曆書)을 안성지역에서 찍어냈다고 말하는 것을 스스로도 의아하게 여겼던 듯하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자신도 “안성에서 역서를 출판하게 된 경위는 알지 못하나 국도에서 가깝고 제지업이 성행한 까닭에 편리하게 역서를 인쇄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¹⁴⁾는 조심스런 추측을 사건으로 덧붙였다.

1990년 간행된 『안성군지』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데, 별도로 전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위에서 말한 김태영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게 분명하다.

方紹介版(其二).”

12) 시현력은 1654년 이후 적용된 역계산의 원리를 일컫는 용어일 뿐이다. 1654-1734년까지 80년간의 역서는 시현력이라는 권두제명으로 간행되었으나, 1734년부터 간행된 역서는 시헌서(時憲書)라는 이름이었고 대한제국기에는 다시 역서의 이름이 명시력(明時曆)으로 바뀌었다.

13) 「수고」, ‘출판과 인쇄’.

14) 위의 글.

안성지의 대량 생산으로 안성에서는 역서를 직접 출간하기도 하였다. [...] 본래 역서는 반드시 정부(담당관청은 관상감)에서만 출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성은 관상감의 관원이 파견되어 [안성에서] 직접 역서를 간행하였다. 이것은 이꺠기좌리에 서 생산된 한지를 서울까지 운반하지 않고 생산지에서 쉽게 [역서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⁵⁾ (()는 원문, [], 강조점은 필자)

『안성군지』의 이 기록 또한 조선시대에 관상감이 역서를 기좌리에서 인쇄했고 “완성된 역서를 만들어 보급”을 운운함으로써 안성 기좌리관 역본(曆本)이 공식적으로 전국 각지에 반포(頒布)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지금까지 김태영의 전언을 장황하게 인용했지만, 위의 인용문들이 말한 요점은 간명하다.

첫째, 1600년대 중반 어름부터 안성 기좌리에서 한지를 생산했는데, 관상감에서 역관이 이를 매입하여 역서를 인쇄했다.

둘째, 기좌리에서는 역서를 직접 인쇄(印出)하기도 했다. 발행 규모는 전국에서 사용할 정도였고, 시기는 조선시대 또는 구한국시대이며 인쇄한 역서의 종류는 시헌력이다.

셋째, 이를 위해 정부(관상감)에서 관원을 파견해 기좌리에 역서인쇄소를 설치했다.

이와 같은 기좌리 역서인쇄설은 그가 직접 체험한 사실도 아니고, 구체적인 사료에 근거한 것도 아니다. 그의 전언이 나름대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해도 그가 쓴 글들은 모두 전거를 밝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술적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신문기사와 잡문 형식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연구자가 아닌 탓이겠지만 그는 이 전언을 단편의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달만 했을 뿐 사실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앞서 말했듯이 김태영은 20대 중반이 되어 안성에 정착한 사람이다. 그의 글의 시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1930년대 중후반 무렵 역서 인쇄와 관련한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을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이 말의 전달자는 당시 안성지역에 살던 나이 든 원로들이었을 게 분명하다.

안성의 역서 인쇄 전통과 관련한 김태영의 전언은 확실히 하나의

15) 『안성군지』, 231.

딜레마다. 생산적 논의를 이끌어내기에는 그의 전언이 너무나 소략한 데다가 그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간단치 않은 문제들이 뒤따른다. 관상감에서 기좌리에 인쇄소를 설치했다거나 전국에서 사용한 역서를 기좌리에서 인출했다는 말에는 일정 부분 정확성을 결여한 기억의 와전 또는 왜곡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석연찮은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까닭 없이 귀를 닫기에도 개운치 않은 측면이 상존한다. 『안성기략』을 통해 그가 과거의 역사전통을 서술하는 데서 얼마나 치밀하고 꼼꼼하게 사실에 기초하기 위해 노력했는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이 적어도 허언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자가 천착하는 것은 역서 인출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편의 전언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의 역서 인출설이 안성판방각본의 기원과 유래, 나아가 그 둘의 상관관계를 헤아려 보는 데 유의미한 전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의 방각본 연구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안성판방각본의 유래를 확인할 수 있는 유력한 사료가 나오지 않는 한, 그 배경을 고찰하는 데 전언과 추론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는 궁벽한 입장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김태영이(또는 그에게 이 사실을 전한 누군가가) 없는 사실을 괜스레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전제에 동의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분명하다. 사실(史實)에 비추어 이 진술의 사실(事實) 여부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일이다.

Ⅲ. 역서의 사조와 안성판 역서

위의 인용문에서 본 바와 같이 김태영은 조선의 조정에서 관상감 역관(曆官)을 파견하여 유서 깊은 한지(韓紙) 산지인 안성 기좌리에서 채력을 찍어냈고, 이렇게 인쇄한 역서 간인본(刊印本)을 전국에서 사용했다고 기록했다.

그렇다면 그도 익히 알고 있었듯이 민간에서는 함부로 찍어낼 수 없는 역서를, 선초의 교서관(校書館)을 제외하고 관상감이 아닌 다른

주체에 의해 관상감 밖의 다른 장소에서 인쇄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더구나 안성과 같이 도성에서 일정한 거리를 둔 지역에 관상감이 인쇄소를 두고 역서의 지방판(地方版)을 인쇄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 있었다면, 안성에서 찍어낸 역서는 『서운관지』가 말한 것처럼¹⁶⁾, 관상감에서 공건(公件) 사건(私件)으로 구분하여 인쇄한 조선 정부의 공식 책력이었을까, 아니면 당시 기좌리의 지장(紙匠) 각수(刻手)들이 사사로이 이문을 얻기 위해 사인사조(私印私造)한 불법적인 해적판이었을까. 김태영의 진술은 기좌리판 책력이 불법적인 사조가 아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의 전언은 과거 안성에서 이루어진 인쇄출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혀 검토·검증된 바 없는 새로운 보고다. 이 보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김태영이 찍어냈다고 하는 기좌리판 역서가 안성지역의 사찰과 서원에서 찍어낸 서지전적¹⁷⁾과는 사뭇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 안성의 역서 출판이 합법적인 인쇄건 불법적인 사조(私造)건 간에, 기좌리에서 실제로 역서를 찍어냈다고 한다면 과거 안성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책력을 방각(坊刻)해온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안성판방각본의 기원을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는 시야를 얻게 된다. 더구나 김태영의 말이 사실이라면 기좌리판(基佐里版) 책력이 판매용으로 제작되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안성에서 찍어낸 역서가 방각본의 개념에 딱 들어맞기 때문에 안성판방각본에 대한 기존의 논의 구도도 수정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 그의 말의 사실 여부를 구명해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통사회에서 역서가 지닌 의미가 무엇이었고, 어떻게 편찬·인쇄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반행(頒行), 즉 유포 보급되었는지에 관한 고찰이 우선되어야 한다.

1. 역서의 의미와 위치

역(曆)은 천체 운행의 주기적 현상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체계

16) 『書雲觀志』 卷1, 「式例」.

17) 이에 대해서는 김한영, 『안성의 인쇄출판전통과 안성판방각본』, '제1장 고려 말에서 조선 중기까지'(46쪽 이하) 참조.

(calendric system)이고, 역법(曆法)은 역을 산출하는 원리(calendric principle)이며, 역서(曆書)는 역법에 의해 계산한 결과를 수록한 책(calendar)을 말한다.

전통사회에서는 역법을 다스려 바로 세우고 이를 달력으로 만드는 일(治曆)이 왕법의 으뜸이요¹⁸⁾, 책력을 반행(頒行)하여 백성들에게 농사철을 알려주는 일을 국가의 중대지사¹⁹⁾로 여겼다. 이를 위해 주무관청인 관상감은 한 해의 역서를 지어서 왕에게 바쳐야 했는데, 이는 상의원(尙衣院)에서 진상하는 명주·모시나 사옹원(司饔院)의 어물, 장원서(掌苑署)의 과일·채소와 같은 방물(方物)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물건으로 인식되었다.²⁰⁾ 그래서 예로부터 치력(治曆)에 신중을 기하지 않는 제왕이 없었고²¹⁾ 한갓된 서책에 지나지 않는 역서를 신민(臣民)들은 군왕의 일부로 여겨 이를 주고받을 때마다도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대해야 했다.²²⁾

역상수시(曆象受時), 곧 천체의 운동을 계산하여 만백성에게 시간과 절후를 알려주는 기능을 지닌 역서의 제조와 반포는 동서고금을 통해 국가의 가장 중한 책무²³⁾로, 제왕이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²⁴⁾이었다. 점성학과 더불어 제왕의 학(帝王之學)으로 일컬어진 천문역상(天文曆象)은 뒤에서 말할 율법이 웅변하듯 일반 백성들에게는 금단의 영역이었다. 시간을 규정하고 천체운동의 이치를 밝혀 보이는 일은 지배와 통치를 정당화하는 권력의 상징이자 제왕만이 독점할 수 있는 천부권한으로 여겨졌기 때문인데, 최고통치자인 군왕이 이를 수명개제(受命改制)하여 반포할 뿐 다른 사람들은 자체생산이 가능하지 않았고 허용되지도 않았다.

역서는 태음력을 기준으로 한 전근대의 자장(磁場) 속에서 살아온 옛사람들이 농사짓는 시기를 가늠하고 가정의 대소사를 치르기 위해 생기복덕이 충만한 날을 택일하는 데 준거 역할을 했다. 이러한 역서에는 1년 중의 시령(時令), 곧 해의 뜬과 짐이나 달의 참과 이지러짐을 바탕으로

18) 『孝宗實錄』 6년(1655) 1월 16일 辛丑.

19) 『正祖實錄』 22년(1798) 11월 30일 己丑.

20) 『書雲觀志』 卷2, 「進獻」, 147; 『正祖實錄』 17년(1793) 11월 17일 丙午.

21) 『世宗實錄』 14년(1432) 10월 30일 乙卯.

22) 『正祖實錄』 17년(1793) 11월 17일 丙午.

23) 『世宗實錄』 3년(1421) 6월 10일 辛丑.

24) 『仁祖實錄』 23년(1645) 6월 3일 甲寅.

한 24절후는 물론 농사와 그날그날의 일진(日辰) 등과 관련한 여러 정보가 낱자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어서, 백성들이 과종과 수확의 제때를 참조²⁵⁾하며 나날의 삶에서 길흉을 가려내고 회복을 헤아릴 수 있는 지침서 역할을 하였다.

책력반사(冊曆頒賜)와 하선동력(夏扇冬曆)²⁶⁾의 풍습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조선 후기 들어서 한 해 최대 36만 건(件)의 역서가 인쇄되었음을 고려하면 조선시대를 통틀어 통시적으로 수천만 건의 역서가 인쇄·반포되었을 만큼 단일 종으로는 발행부수가 최대에 이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책력 보아 가며 밥 먹는다’는 속언이 함축하듯, 과거에 역서는 위로는 왕실과 백관이 사직에 제사하고 종묘에 향사하는 길일(吉日)을 간택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아래로는 일반 백성들이 관혼상제는 물론 물고기를 잡는 일이나 지붕을 올리는 일과 같은 허드렛일에서부터, 심지어 뒤(대소변)를 보는 일에 이르기까지²⁷⁾ 역서가 담고 있는 시간 원리를 지침으로 삼았을 만큼 일상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었다. 요컨대, 역서는 전통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과 의식을 지배하는 마법의 책이었던 셈이다.

2. 역서의 사조사인(私造私印)과 유통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사회에서 치력(治曆)과 역서의 반포는 제왕의 천부적 고유권한이자 권위의 상징이었기에 이를 사조(私造)하거나 넘보는 행위에는 당연히 엄한 처벌이 뒤따랐다. 서로 다른 역일(曆日)이 유통되면 시간의 질서가 흔들리게 되고, 따라서 국가적 대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5) 예컨대, 정조 4년(1780) 11월 24일 실록에서 남원 유학 장윤이 지어올린 농서에 관한 언급 참조. “우수에는 삼밭을 갈고, 경칩에는 농기구를 정비하며, 춘분에는 울벼를 심고 청명에는 울기장을 심으며, 곡우에는 호미질하러 나가고 입하에는 들깨를 심으며, 망종에는 모시와 삼을 거두고 하지에는 가을보리를 거두며, 입추에는 메밀을 심고 처서에는 울벼를 수확한다.”

26) 왕에게 진상된 역서를 조정의 여러 부서와 각 고을의 감영에 배포하는 일과, 단오에는 부채를 선물하고 동지에는 책력을 선물한다는 의미이다. 崔永年, 『海東竹枝』, 「名節風俗」.

27) 백두현, 『현풍꼭씨 인간 주해』(태학사, 2003): 김혁, 「역서의 네트워크: 왕의 시간과 일상」, 『영남학』 제18호(2010), 275-276 참조.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의 근간이 된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는 인신(印信)과 역서를 위조하는 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천문역법과 관련된 서적을 소지하는 것은 물론 천문역학의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 이를 사사로이 공부하는 자까지 장형으로 다스리며²⁸⁾, 역서를 위조하는 자는 목을 베어 사형에 처한다²⁹⁾고 했으며, 이를 고발하는 자도 상을 준다고 했다. 관상감의 천문학자 성주덕(成周惠, 1759-?)이 쓴 『서운관지』³⁰⁾도 관인(官印)이 찍히지 않은 사조 역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율문(律文)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고³¹⁾ 몰래 역서를 인쇄할 경우 위조인신율(偽造印信律)에 의거 처벌한다고 했다.³²⁾

법은 그 법을 어기는 행위가 있기에 만들어지는 것인지만, 이처럼 역서의 사간(私刊) 위조죄를 엄격히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서의 사조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앞서 말한 김태영도 “민간에서는 임의로 출판할 수 없는” 역서를 안성의 기좌리에서 인쇄했다고 했다. 관련 사료들을 두루 고구할 때, 김태영이 말한 기좌리판 역서는 조선 중후기에 들어서 널리 유행한 사조사인(私造私印)의 한 형태라 할 것인데,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서의 사간위조(私刊偽造)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기록에는 관상감의 공식적 역서와는 판(版) 또는 판(板)이 다른 역서를 만들어내는 행위에 대해 사조·사인(私印)·사간(私刊)·사각·위조(偽造)·사자개간(私自開刊)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³³⁾ 이 말들이 그 자체로 웅변하듯, 모두 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이 사적으로 역서를 찍어냈음을 일컫는 표현들이다. 역서의 사조사인이라 함이 어떤 과정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기록은

28) 「禮律」, 儀制 篇, 收藏禁書及私習天文 條.

29) 「刑律」, 詐僞 篇, 偽造印信曆日等 條.

30) 조선조 천문역학의 발달과 제도의 연혁을 기록한 책으로 1818년에 간행되었다. 서운관(書雲觀)은 1308년 천문 등을 관장한 부서인 태사국(太史局)과 사천감(司天監)을 통합해 만든 관청인데,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에 사용한 관상감의 옛 이름이다. 1466년(세조 12)에 관상감으로 개칭되었으며 서운이라는 이름은 『좌씨춘추전』의 “分至啓閉 必書雲物”이라는 구절에서 따온 이름이다. 서운관과 관상감은 천문·지리·역수(曆數)·점주(占籌=占算)·측후·각루 및 역서의 편찬과 인쇄, 반행(頒行)을 담당했다. 『書雲觀志』 卷1, 「官職」, 21. 이하 『書雲觀志』의 인용 쪽수는 이면우 등의 역주본(소명출판, 2003) 면수 표시임.

31) 『書雲觀志』 卷1, 「治曆」, 103; 卷2, 「式例」, 154.

32) 『書雲觀志』 卷2, 「式例」, 154.

33) 정해진 수량 이외로 찍어서 사익을 취한 남인(藍印)도 이 경우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없으나, 사인이 천문을 추보(推步, 천체운행의 관측)하여 하늘의 여러 현상과 역일(曆日)을 계산한 후 관상감의 역서와 다른 내용의 판본을 독자적으로 마련해 찍어낸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엄격한 시험을 통해 선발되고 추보와 역산(曆算)에 다년간의 경험을 쌓은 전문 천문학자들마저도 역 계산에 오류를 범해 문책과 처벌을 받은 사례가 빈번했다. 게다가 시간을 다룬 역서의 특성상 제때를 맞추지 못하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수요의 시점에 맞추어 새로운 판본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관상감에서 역관들이 계산하여 산출한 원본을 반력(頒曆)하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하본의 서사(書寫)·제판(製版) 또는 조판(組版)·판각(板刻)·인출(印出)·감인(監印)·도침(搗碄)·장황(粧纘)의 여러 과정도 성주덕이 소상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이런 측면을 두루 고려하면 역서의 편찬은 개인이 사사로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630년 교서관 소속 장인 계인(桂仁)과 관련된 『승정원일기』의 기사도 이 점을 시사해준다. 역서를 사인한 계인을 의율치죄(依律治罪)할 것을 청한 관상감 계목(啓目)에는 “계인이 사인한 역서에 누락된 부분이 태반이요 오자 또한 많아 경악을 금치 못할 일”³⁴⁾이라며 여인일판(如印一板)하지 않음을 개탄하는 내용이 보인다. 관상감의 역서 간인본이 주자(鑄字)나 목활자를 이용한 활자본인지 판목에 새겨 찍은 목판본인지에 따라 사조행위의 성격도 달라지겠지만, 조선 후기 일반에 반포된 책력은 대부분 목판본이었다.³⁵⁾ 계인이 찍은 역서는 관상감의 초고(草稿)나 원판(原版)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저본이나 원판목이었다면 누락이나 오자가 있을

34) 『承政院日記』, 인조 8년(1630) 1월 24일 甲辰. “遺漏太多 誤字亦多 極爲駭愕.”

35) 드물게, 역서를 판본학적 관점에서 조사한 최근의 연구(김향숙, 「조선시대 책력의 간행과 판본」,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27쪽, 32-33쪽)에 따르면, 1579-1652년에 인쇄된 13건의 대통력(大統曆) 판본 중 갑오년대통력(1593)을 제외하고 모두 인력자(印曆字)로 찍은 주자인쇄본이었다. 반면, 1672년부터 1896년 사이에 간행된 시헌(曆)서 80종 중 금속활자본은 17종에 지나지 않았으나, 목판본은 무려 63종에 달했다. 이 시기 시헌서는 내용삼서(內用三書)와 달리 대부분 목판본으로 인쇄된 것인데 18세기 중반 이후 책력이 대중화하면서 활자본이 감소하고 싼 값에 찍어낼 수 있는 목판본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백성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값싼 목판본을 많이 찍은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서운관지』도 전에는 일과(日課)와 칠정력의 경우 철자(鐵字)를 썼지만(즉, 금속활자로 찍었지만), 지금은 내용삼서만 철자를 쓰고 일과와 칠정력·백중력·천세력을 인쇄하는 데는 배나무판이나 피나무판 판목을 써서 목판 인쇄를 한다고 했다. 『書雲觀志』 卷2, 「式例」, 156.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한 행위는 관상감의 원본을 몰래 베껴서 부실한 판하본(板下本)을 만든 후 이를 각관 인출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역서를 사조사인한다 함은, 대체로 계인의 사례와 유사한 행위를 이른 듯하다. 앞서 말했듯이, 인조인산일에 의거 참형으로 다스리는 게 국법이였지만 조선시대 내내 관상감 내외를 가릴 것 없이 이러한 사인상매(私印商賣)가 횡행해서 관상감에게는 골칫거리였다.

조선시대에 역서의 인행(印行)을 담당한 관청은 관상감이다. 선초에는 교서관에서도 간행한 사례³⁶⁾가 보이지만, 1894년의 개혁을 통해 관상감이 관상국으로 바뀔 때까지 역서의 간행, 반포는 줄곧 관상감에서 관장했다. 『서운관지』에 따르면, 관상감에서 매년 퍼낸 역서는 공건(公件)과 사건(私件)으로 구분해 찍어냈다. 공건은 대전, 내전, 세자궁, 빈궁에 진헌하는 역서와 종친 및 고위 문무관에 봉여(封餘)³⁷⁾, 반사(頒賜)³⁸⁾하는 것, 경향의 여러 관청에 분아(分兒)³⁹⁾하는 것을 말한다. 사건은 그 이외로 찍어낸 역서를 말하는데, 관상감은 이 가운데 일부를 중앙관청의 하급 관직자와 지방의 관아에게 종이나 면포, 그리고 나중에는 돈을 받고 판매⁴⁰⁾했는데 이를 무거(買去)라 했다.⁴¹⁾ 역서 인출량이 급증한 조선 후기에 들어서 공건으로 찍은 역서는 전체 인출량의 10% 남짓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 역서는 사건으로 인출한 것이었다. 진헌하는 것 외에

36) 『書雲觀志』 卷2, 「式例」, 152-153.

37) 임금에게 진헌한 물건 중 남은 물건을 신하들이 나누어 가진 것을 말한다.

38) 임금이 신하에게 물건을 내리는 일. 서책의 경우, 내사(內賜)라 한 경우가 많았다.

39) 관서의 관원들에게 연례적으로 물건을 나누어주는 일. 분하, 분급도 같은 뜻이다.

40) 애초에는 종이를 받고 무거의 방식으로 분급되었던 역서가 조선 중기 들어서는 일정량을, 후기에는 상당량을 돈을 받고 팔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역서의 유통과 관련한 단편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관상감 관원이나 잡직들이 판매했으나, 나중에는 공인 상인들이 거래에 개입했고, 장시(場市)나 서사(書肆)에서도 누구나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서운관지』에도 역서의 가격에 관한 언급이 자주 보이고, 『辛亥啓下觀象監釐正節目』(1791)나 『癸丑啓下事目』(1793)에 이전에 정해둔 역서 인출량보다 더 많이 찍어내면 값이 너무 헐하고 팔기도 어려워 12월까지 다 처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허윤섭, 「조선 후기 관상감 천문학 부문의 조직과 업무-18세기 후반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32쪽 참조)는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그러하다. 또한 1738년 11월 28일자 『承政院日記』에 역서가투식죄(曆書價偷食罪)를 범한 김광택(金光澤)에 관한 기사가 보이는데, 구체적인 죄상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아마도 이렇게 판매한 역서의 대금을 훔친 죄가 분명하다. 이로 미루어보면 관상감의 사건은 상당수가 판매용으로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애초에는 물물교환 방식과 유사하게 종이와 면포를 받고 무거(買去)했으나, 나중에 책력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여겨진다.

41) 『書雲觀志』 卷2, 「式例」, 152-153 참조.

사건으로 찍은 90% 가까운 역서들은 대부분 무거의 방식으로 반행(頒行)되었는데, 이 중 상당수는 경향 간 여러 관서의 행정적 수요에 충당된 것으로 보인다.

책력을 사조한 주체는 대체로 둘로 나뉜다. 하나는, 공식적으로 역서를 발행, 배포하는 관청인 관상감이나 교서관에 소속되어 역서의 간행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잘 아는 장색(匠色)이나 이속(吏屬) 등 구실아치들에 의한 것이다. 가장 빈번하게 남인사조(藍仁私造)가 이루어진 것은 역설적으로 관상감 내부, 혹은 그 주변에서 관상감과 관련을 맺고 활동한 이들 장인(匠人)이나 하리(下吏)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⁴²⁾ 관상감에서 매년 인쇄를 마친 판본(版本)은 이를 몰래 찍어내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본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⁴³⁾ 그런데 관상감에서 역서 제작을 담당한 이들이 초고(草稿), 즉 역관들이 계산한 결과가 정서된 원본을 몰래 베끼거나 관상감에서 찍어낸 역서 간인본을 저본으로 삼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롭게 판각하여 사사로이 책력을 찍어낸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처럼 관상감과 관련된 구실아치에 의한 사조행위는 사건으로 박은 역서에 집중되었다. 사건은 공건과 인쇄의 주체가 달랐고, 18세기 후반까지 사건의 인쇄가 관상감 밖의 인쇄공방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상감의 통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데 그 원인이 있었다.

다른 하나는, 1637년 비변사의 상주(上奏)⁴⁴⁾나 1799년 정민시(鄭民始, 1745-1800)의 계청⁴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법에 어두워 역서를 무단으로 찍어내는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모르는 지방민들에 의해 행해진 것이다.

42) 앞서 예로 든 개인은 교서관 소속의 장색(匠色)이었지만, 조선 후기의 역사사조는 관상감에 인력소가 설치된 이후로는 관상감 소속 장인들이 연루된 경우가 많았다. 즉위년인 1777년에 정조는 책력을 사조한 이동이(李暹伊)에게 법에 따라 사형을 언도했으나, 특별히 삼복(三覆)을 행한 후 사형을 감하고 정배(定配)하도록 명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正祖實錄』 원년(1777) 11월 24일 丙戌). 이동이는 관상감의 자격장(自擊匠)이었는데 그와 공모한 김치학(金致學)과 신성득(申成得)도 관상감 소속 각수장(刻手匠), 인쇄장(印出匠)이었다(『承政院日記』, 정조 원년(1777) 2월 28일 甲子). 1842년에는 또 다른 역서위조죄인 신대흥(申大興)을 참형으로 다스려야 하나 감일등(減一等)하여 곤장 100대를 때린 후 함경도 단천으로 정배토록 했는데(『承政院日記』, 헌종 8년(1842) 5월 28일 丙子) 거주지만 서울로 적혀 있을 뿐 그의 직업이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그 또한 관상감 소속이었거나 그 주변에서 활동한 장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3) 『書雲觀志』 卷2, 「治曆」, 102.

44) 『仁祖實錄』 15년(1637) 8월 9일 甲辰.

45) 『書雲觀志』 卷2, 「式例」, 156; 『承政院日記』, 정조 23년(1799) 9월 13일 戊辰.

각 도의 감영이나 지방의 관아에 소속된 인쇄장들이 법으로 금한 역서의 간인에 참여했을 가능성은 많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역서를 사각한 지방민들은 대부분 지소(紙所)나 그 인근의 향리에서 방각을 업으로 삼아 활동한 지장이거나 각수들이었을 것이다.

전자는 다시 1766년 관상감 내에 인력소가 설치되어 사건의 인쇄를 관상감의 통제하에 둔 시점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관상감 소속 부서인 일과청(日課廳)에서 담당한 공건은 관리와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져 문제가 없었지만 사건의 인쇄는 그러하지 못했던바, 성주덕이 언급한 바와 같이⁴⁶⁾ 관상감에 적을 둔 자들이 이문을 좇아 빈번하게 역서를 사간(私刊), 남인(藍印)했다. 관상감 영사 홍봉한(洪鳳漢)과 제조(提調) 윤급(尹汲) 심수(沈鏞)가 1766년 보리지책(保釐之策)을 시행한 것은 이런 그릇된 관행을 혁파하기 위한 것이었다. 방책의 요지는, 각 관아에 나누어줄 역서와 관상감이 자체적으로 처분하는 역서의 인행(印行) 작업을 위해 관상감 내 천문직려(天文直廬) 남쪽에 6칸의 인력소를 세워⁴⁷⁾ 사건의 역서 인쇄를 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행으로 되풀이되어온 사조와 남인의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쇄신책과 관련하여 눈길을 끄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인데, 여기서 성주덕의 언급이 너무 소략해 저간의 사정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棚置印曆之所 盡刷各司分兒之散在 幾人者給價入官⁴⁸⁾

위의 원문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본⁴⁹⁾은 “인력소를 창설하고, 각사의 분야가 몇 사람에게 흠어 있는 것을 값을 주고 입관하고”로 옮긴 반면, 소명출판 역주본⁵⁰⁾은 다음과 같이 새겼다.

인력소를 새로 설치하여, 각 관서에 분야하는 역서를 여기저기 흠어져 있으면서 찍어내던 관행을 모두 없애고 [그렇게 사적으로 인쇄하던 사람들 중 몇 사람은 값을 주어 관으로 들이고 (I)는 원문, 강조점은 필자)

46) 『書雲觀志』 卷2, 「式例」, 153.

47) 『書雲觀志』 卷1, 「官廩」, 42.

48) 『書雲觀志』 卷2, 「式例」, 154.

4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집부, 『국역 서운관지』(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96쪽.

50) 성주덕 저, 이면우·허윤섭·박권수 역, 『서운관지』(소명출판, 2003), 153-154쪽.

소명출판 역주본을 좇으면, 1766년 홍봉한 등이 쇄신책을 내놓기 전에는 진헌 반사하는 것 외에 각사 분하용 등 사건으로 인쇄하는 역서들은 관상감 소속이 아닌 외부의 인쇄기술자들에게 하청을 주어 해결해왔는데, 이들이 역서를 인쇄하던 장소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관상감은 쇄신책을 통해 감내(監內)에 인력소를 새로 설치하여 진헌 반사용 역서, 즉 공건 이외에 사건으로 찍은 역서를 관상감 내부에서 인쇄하는 것으로 일원화했다. 이를 위해 관상감에 소속되지 않았던 인쇄 장인들 중 몇몇을 관으로 불러들여 관상감에 적을 두게 했는데⁵¹⁾, 새로 설치한 인력소에서 역서를 찍어낼 인쇄기술자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값을 준다(給價)’는 그들이 역서를 박아낸 만큼 일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읽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한 인쇄기술자들은 아마도 「이예(吏隸)」 편에 보이는 장색(匠色)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성주덕은 이 인쇄장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散在)고 했는데, 이는 인력소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사건으로 간행한 역본(曆本)들을 찍어낸 인쇄장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다시 말해 관상감 밖의 여러 장소와 지역에 산개되어 인쇄 작업을 수행했던 과거의 사정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홍봉한의 개혁조치가 사건으로 찍은 역서의 인쇄를 일원화하는 데는 효과를 거둔 듯하나, 관상감 내부의 사조사인 관행은 19세기 들어서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형태를 바꿔 계속되었던 것 같다. 몰래 남인한 사조역서를 내다 파는 일은 장포(場圃, 텃밭)를 마련하고 재물을 늘릴 정도로⁵²⁾ 이문이 많이 남는 장사였는데 이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쇄신책의 시행으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후 성주덕이 다음과 같이 개탄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관상감에 적을 두고 있는 자들이 [사건으로 찍은 역서들을] 서로 매매하고 [...] 사적으로 인쇄해서 사익을 얻고 [...] 오직 이익만을 다투어 역서 인출량이 수요와 맞지 않고 가격도 일정하지 않다.⁵³⁾ (〔 〕는 원문, 강조점 필자)

여기서 말한 ‘관상감에 적을 두고 있는 자들’은 아마도 1766년 쇄신안에

51) 『書雲觀志』 卷2, 「式例」, 154.

52) 『書雲觀志』 卷2, 「式例」, 153.

53) 『書雲觀志』 卷2, 「式例」, 153.

따라 관으로 불러들인 저자의 인쇄기술자들⁵⁴⁾을 지칭한 것 같다. 이들의 사인은 관상감 내부의 목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각수장·인력장·인출장·책장(冊匠) 등 주로 인쇄업무에 종사하던 공장(工匠)들이 비록 관상감에 적을 두긴 했으나, 『서운관지』의 「관직」 편에서 이들을 논외로 한 것으로 보아 관상감 내에서의 신분은 오늘날의 비정규직과 유사한 형태였던 것 같다. 사건으로 찍은 여분의 책력에 이문을 붙여 처분(取息)해서 “원역(員役) 공장(工匠) 복예(僕隸) 등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인 봉급을 받게 한다”⁵⁵⁾는 구절에서 미루어볼 수 있듯이, 이전에는 이들의 처우가 열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관상감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이들에 의한 남인사조를 암암리에 묵인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⁵⁶⁾

이 밖에도 관상감은 사조를 방지하기 위해 역본에 답인(踏印)을 강화하는 조치도 시행했지만 역시 실효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다. 중력(中曆) 이하에만 답인했던 이전과 달리, 1766년부터는 일과청에서 간인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공건과 사건에 관인을 찍게 했으나⁵⁷⁾, 여전히 사조 역서들이 나돌았는지 순조는 즉위년인 1801년에 어명으로 진헌용을 포함한 모든 역서에 답인하게 함으로써 사조를 근절하고자 했다.⁵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관행으로 이어져온 역서의 사인상매(私印商賈)는 1811년 인력색서원이 역서를 훔쳐 달아나기도 하고⁵⁹⁾ 1842년에는 신대흥(申大興)이 사사로이 책력을 찍어낸 사례⁶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조선 후기 내내 횡행했다.

과거 안성지방에서 방각된 서책, 곧 안성관방각본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역서 사조사인의 두 번째 경우인데, 역서를 사사로이 찍어내는

54) 아마도 인력색서원(印曆色書員)을 말하는 듯한데, 이들은 정례로 정해진 녹봉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다. 오늘날로 말하면, 관상감 소속의 비정규직이었던 셈이다. 역서는 연중 수시로 찍는 것이 아니라, 『서운관지』에서 말한 것처럼 일정한 기간 동안만 인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역서를 찍을 때만 일거리와 그에 따른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55) 『書雲觀志』 卷2, 「式例」, 152.

56) 조선조 관찬본의 인쇄와 출납을 관장한 교서관의 수장을 지낸 유희춘이 남긴 『미암일기』에도 관 소속 장인들이 사사로이 이문을 얻기 위해 사적으로 관찬본을 간인했던 사례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우정임, 「16세기 후반기 방각본의 출현과 책패의 활약」(『역사와 경계』 76권, 2010)을 참조하라.

57) 『書雲觀志』 卷2, 「式例」, 154.

58) 『書雲觀志』 卷2, 「治曆」, 103.

59) 『書雲觀志』 卷2, 「屬官」, 144.

60) 『承政院日記』, 현종 8년(1842) 5월 28일 丙子.

일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지방 거주자들에 의한 불법 사각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1799년 관상감 제조 정민시가 다음과 같이 임금에게 주청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역서를 사적으로 인쇄하는 일은 법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는데도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법의 뜻을 모르고 월력장(月曆張)⁶¹⁾을 사적으로 만들고 인쇄해서 판매하는 것들이 어지럽게 돌아다니니 각별히 엄금하는 뜻으로 각 도의 감영에 단단히 타일러 경계(申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임금이 따랐다.⁶²⁾

이런 문제는 비단 조선 후기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임진왜란 직후(1637) 비변사에서 올린 계청에, “역서를 여염에서 사사로이 찍어 장사꾼들이 가져가는 것은 금단하기 어려운 형세이니”⁶³⁾하는 구절이 보인다. 임진왜란 직후 저자에서 사인상매(私印商賈)하는 역본의 사가판(私家版)이 널리 방각되었고, 비변사의 계청은 이러한 현상이 이미 도처에서 보편화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기가 실로 어려운 형국이 되었음을 토로한 것이다. 이러한 기록들은 극형이라는 서술 퍼런 국법에도 불구하고 올문(律文)에 무지하거나 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지방에서는 빈번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지방판(地方版) 역서의 사적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관상감에 적을 두고 있는 장색들의 사조가 관리부실과 열악한 처우에 원인이 있었다면, 지방판 역서의 “인매(印賣)가 낭자(狼藉)”한 것은 수요 부족이나 유통의 왜곡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제국이 선포된 해(1897)에 거주서(假注書)였던 유생 오연근(吳年根)의 상소에 역서가 “몇 집 걸러 하나”⁶⁴⁾ 풀이었다고 언급한 내용으로 미루어 그 대강을 어림할 뿐, 과거 지방의 관원과 사족, 일반 백성과 농민에게 분급된 역서가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조선 후기의 문신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이 남긴 『이재난고(頤齋亂稿)』에는 전의현감 봉직 시 그가 증여한 64건의 책력(靑曆 2, 中曆 22, 小曆 41, 七政曆 1)에 관한 기록이 나오고, 경상감영의 『사례집』도

61) 역서의 일종으로, 1장에 24절을 적어 넣은 간결한 형태의 단력(單曆)이다.

62) 『書雲觀志』 卷2, 「式例」, 156; 『承政院日記』, 정조 23년(1799) 9월 13일 戊辰.

63) 『仁祖實錄』 15년(1637) 8월 9일 甲辰.

64) 『高宗實錄』 광무 1년(1897) 4월 13일.

지방수령이 연례적으로 하사하는 역서 46건을 감영 내 각 부서에 분급했다고 기록했지만⁶⁵⁾ 전의현의 경우는 황윤석의 사적 증여로 보이고, 경상감영의 경우도 46건이 영영(嶺營)에서 무거 또는 분급받은 역서의 전부라고 하긴 어렵다. 『승정원일기』에 남아 있는 영조와 오언유(吳彦儒, 1710-?)의 대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8세기 중반 향리의 양반사족들은 대부분 역서를 구해 볼 수 있었지만⁶⁶⁾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나 대다수의 상민들은 그러하지 못했고, 그나마 사정이 나은 사람들은 기껏해야 단력장(單曆張) 정도를 손에 넣을 수 있을 뿐이었던 것 같다.

『서운관지』에는 지방에 분급한 역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소략한 내용만 보인다.

전에는 [...] 여러 도의 감영과 병영 수영에서 관례대로 각각 면포 몇 필씩을 내고 받아갔는데 지금은 단지 본감관상감에서 관문을 보내면서 [약간의 역서를] 나누어 보내준다.⁶⁷⁾ (I 는 원문)

지방의 여러 고을에서 종지와 면포를 바치고 받아가는 것을 무거라 하는데 지금도 약간의 역서를 [지방으로] 나누어 보내준다.⁶⁸⁾ (I 는 원문)

1773년에는 “사건의 인출량을 1,000축⁶⁹⁾ 늘려서 서울과 지방에 널리 배포하는 데 보탬이 되게 했”⁷⁰⁾는데, 이는 지방에서 수요로 하는 책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관상감이 지방에 역서를 분하할 때 종지와 면포로 무거하거나 관문과 함께 보냈던 관례로 미루어보면, 지방에서 소용될 역서의 유통은 대체로 경저(京邸)나 영저(營邸)를 운영하는 저리(邸吏)들이 분급·전달의 통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후반 들어서는 공방을 운영하던 공물주인(貢物主人)이나 지방 사족 집안의 단골서리 같은 사람들도 역서의 유통에 개입하기도 했다.⁷¹⁾ 잘 알다시피, 중앙과

65) 김혁, 앞의 책, 268-270쪽.

66) 『承政院日記』, 영조 34년(1758) 12월 29일 辛巳.

67) 『書雲觀志』 卷2, 「頒賜」, 152.

68) 『書雲觀志』 卷2, 「式例」, 153.

69) 1축이 20건이므로 곧 2만 건을 말한다. 여기서 배포지역이 서울과 지방(中外)이라 했기 때문에 1,000축 가운데 일부만이 지방에 분어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70) 『書雲觀志』 卷2, 「式例」, 154.

71) 黃胤錫, 『頤齋亂藁』 2, 戊子年(1768) 7월 11일; 김혁, 앞의 책, 271쪽.

지방관청의 연락사무, 공물의 방납, 또는 인사문제의 해결 등을 담당하는 이들은 오직 사익만을 쫓았고, 따라서 조선 후기 이들의 문란과 전횡이 심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던 부류에 속한다. 제조 정민시가 매번 지방에 역서를 반행하는 때에 이르러 잡란(雜亂)의 폐가 끊이지 않았다⁷²⁾고 말한 것은 아마도 역서 유통과정에 개입한 이들 공인(貢人)이나 사주인(私主人)에 의한 작난(作亂)을 지적한 것일 개연성이 높다. 역서 유통의 폐해라 함은 수급의 불안정으로 인한 가격의 폭등이나 폭락, 또는 밀거래 시장의 형성 따위를 말하는 게 분명한데, 같은 시기(1798) 또 다른 제조였던 서호수(徐湖修, 1736-1799)가 책력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인쇄량을 늘릴 것을 건의⁷³⁾한 것도 같은 맥락의 문제 제기로 이해된다.

요컨대 조선 후기 들어서 지방의 수요에 대한 공급부족이나 유통시장의 왜곡, 중간 상인들의 잡란으로 인해 지방의 각지에서 수요로 하는 책력의 수량을 충족시키지 못한 게 분명하다. 이는 지방에서 역서를 방각할 환경이 팽배해 있었음을 의미한다.

3. 기좌리판 역서의 방각(坊刻)

위에서 보았듯이, 일제강점기에 안성에서 지역사 관련 글들을 집필한 바 있는 김태영은 “정부에서 안성 기좌리에 관상감 관원을 파견하여 역서인쇄소를 두고 전국에서 쓰이는 역서를 출판하였다”고 기록했다. 거듭 말하지만, 김태영의 이 전언은 전국에서 쓰일 역서를 기좌리에서 인쇄한 것이 관상감의 공식적 행위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접어들어 안성에서 역서를 대량으로,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인출해낸 것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다고 할지라도, 관상감이 직접 개입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그의 전언과 달리, 정부(관상감)에서 공식적으로 안성 기좌리에 관원을 파견하여 관상감의 분원 또는 직소와 같은 형태의 인력소를 설치하여 역서를 찍어낸 후 이를 전국 각지에 분급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⁷⁴⁾

72) 『書雲觀志』 卷2, 「式例」, 156.

73) 『書雲觀志』 卷2, 「式例」, 155.

그렇게 여기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1818년에 역서 제작과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실을 소상하게 기록한 『서운관지』에 지방의 인쇄소 설치는 물론 역서의 지방관을 인쇄했다는 사실이 전혀 언급된 바가 없으며, 전후의 다른 기록물에서도 지방관 역서의 이행(印行) 사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1818년 이후에 조정과 관상감의 사정이 급변하여 안성과 같은 지방에 인쇄소를 설치하고 전국에서 사용될 책력을 대규모 인쇄했을 것으로 보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아울러 관상감에서 안성에 인쇄소를 설치해서 역서를 찍은 게 국가의 공식행위였다고 한다면 과거 기영(畿營)이나 안성관아에서 산출한 행정 자료집들에는 그런 사실이 남아 있어야 한다. 특히 관내의 공적 자산들인 공해(公廩)나 사우(祠宇)는 물론 사창(社倉)이나 제언(堤堰)까지 세세하게 기록한 읍지 등 안성지방의 지지(地誌)들에는 기좌리에 설치되었다고 하는 관상감의 인력소와 역서 인출 사실에 관한 내역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역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⁷⁵⁾

따라서 김태영이 말한 역관은 영사나 제조의 명을 받아 관상감의 공식 업무를 수행한 책임자였다기보다 역서를 몰래 간인해 이익을 얻기 위해 사적으로(다시 말해, 불법적으로) 안성을 찾았던 관상감의 잡직 이속이거나 관상감에 적을 둔 인쇄기술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김태영이 말한 안성의 역서 인출은 조선시대, 특히 후기 들어서 널리 횡행한 사조사인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는데, 그의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관상감 내부에서 활동한 인쇄기술자들이 주도했거나 이들이 기좌리의 지장들과 연계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는 게 합당할 듯하다.⁷⁶⁾

74) 이 점에 대해서는 『서운관지』의 성격과 편찬과정을 주목해야 한다. 관상감 소속 역관으로,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인 서호수 김영과 함께 『국조역상고』를 편찬한 성주덕은 4권 2책의 이 책을 쓰기 위해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옛 문헌을 상고했다. 특히 제2권에서 역서를 펴내는 장소와 과정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는 바, 관상감 이외의 장소에서 지방관 역서를 공식적으로 찍어낸 것이 사실이라면 성주덕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리가 없고, 알고 있었다면 『서운관지』의 성격상 이 사실을 누락할 리가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75) 조선 후기에 편사된 『안성읍지』 「군병(軍兵) 조속(曹屬)」 조에는 읍속 잡직들과 군병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관상감 생도보가 7명 포함되어 있다. 과거 각 지방의 감영이나 군현은 천문·기상·지질 현상들의 측후를 위한 하급관원을 두기도 했지만, 여기에 보이는 생도보는 실직은 아니었던 것 같다. 아마도 군포(軍布)를 충당하거나 요역(徭役)을 부과하기 위한 보인(保人)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안성의 역서 인출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766년 관상감에 인력소가 설치되기 이전 시기에 관상감 외부에서 역서를 인쇄했다는 인쇄기술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흥봉한의 쇄신책이 있기 이전에 저자에서 인쇄를 업으로 삼으면서 관상감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역서를 인쇄해 납본한 것으로 보이는데, 성주덕은 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인쇄했다’고 했다.

이들이 흩어져서 인쇄한 이유는 아마도 인쇄용지를 공급하는 지소의 입지와, 대량으로 목판본을 찍어낼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환경을 고려한 측면이 가장 컸을 것이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인출용지 없는 인쇄는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종이는 과거의 인쇄출판에서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 역서를 사사로이 찍어내고자 하는 자들이 역서지를 풍부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한지의 산지와 연계 유착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런 점들이 바로 이들이 역서지의 생산지를 찾아 ‘여기저기 흩어져서’ 인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일 것이다. 김태영의 전언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이들 중 일부가 안성에 와서 인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관상감 관원’이니 ‘역관’이니 운운한 것은 성주덕이 말한 대로 이들이 관상감에 적을 둔 신분이었기에 당시 기좌리 사람들은 당연히 관상감의 관원으로 여겼음직도 하다.

『서운관지』는 이 시기에 이미 공·사건 역서의 인출량이 연간 20만 권을 넘어섰고 19세기로 접어들기 직전에는 최대 36만 권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역서 한 권이 평균 15장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때 단순셈법으로 계산하면 한 해에 찍어낼 역서지가 무려 540만 장이나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이 수치에는 사조된 역서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실제로 역서를 인쇄하기 위해 한 해에 소요된 용지는 이를 훨씬 웃돌았을 게 분명하다. 관상감으로서는 무거나 공물을 통해 이처럼 방대한 역서지를 모두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게 틀림없다. “매년 역서를 인쇄할 시기가 되면 역관이 누만의 돈을 가지고 이 동리에 이르러 종이를 사 모으게 되어”⁷⁶⁾ 라고 운운한 것은 아마도 이처럼 막대한 양의 역서지가

76) 안성의 역서 인쇄가 관상감의 공식적인 행위인가, 기좌리의 지장 각수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사로이 찍은 것인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관주가 관(官)인지 민(民)인지의 여부가 안성관 역서를 관찬본의 일종으로 분류할 것인지 방각본으로 볼 것인지 가능하는 척도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77) 「曆書紙로 實用튼 安城郡의 朝鮮紙」, 《동아일보》, 1929년 7월 4일자; 7월 6일자 연재

필요한 상황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김태영은 관상감 ‘역관’이 애초에는 안성의 두 동리에서 역서 간행에 필요한 역서지를 대량으로 공급받기만 했으나, 나중에는 아예 기좌리에 인쇄 거점(인쇄소)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역서를 찍어냈다고 했다. 도성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서 세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데다가, “조선 300년 동안 거의 모든 역서지를 공급했을 만큼” 생산량 또한 국가의 공식 종이제조 공방인 조지서를 제외하면 양적인 측면에서 단연 기전 으뜸⁷⁸⁾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기좌리와 불현리를 찾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 경우 “제지업이 성행한 까닭에 편리하게 역서를 인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쓰이는 역서를 [안성에서 출판하였]”다는 김태영의 진술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게 된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김태영의 기록은 확실히 하나의 딜레마다.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사료나 문헌기록의 뒷받침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80여 년 전에 남긴 과거의 기록을 맹목적으로 역사적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치부하는 태도 또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증을 바탕으로 하여 그의 전언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겠다. 관상감 소속의 서원(書員)·공장 등 직급이 낮고 처우가 열악한 관상감의 하리들이 역서를 사조상매하기 위해 종이 생산이 풍부하고 세인의 눈을 피해 역서를 사인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안성에 이르렀다. 당시 기좌리 불현리의 지장들은 처음에

기사.

78) 과거 경기도 지역에서 안성만이 한지의 산지였던 것은 아니다. 규장각도서인 『畿甸營事例冊』(1894)을 보면, 화영(華營, 수원)에는 지소(紙所)가, 광영(廣營, 광주)에는 지통소(紙筒所)가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지소와 지통소는 화성과 광주에 설치된 유수영(留守營)에서 자체적으로 종이를 생산했던 시설로 추정된다. 수원 인근에도 한지를 생산한 지역들이 있었는데, 화성 축성과정에서 필요한 종이를 생산했던 용주사의 지소 외에도 지소동(紙所洞, 팔달구 연무동), 지꽃리(紙串里, 오산시) 등지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지소들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양적인 측면에서 기좌리와 불현리의 생산량에 필적할 규모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지 제조업의 침체기였던 1929년 7월 4일 《동아일보》는 대한제국기에 기좌리와 그 인근 마을인 불현리에서 제조한 종이의 양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1가구당 평균 생산량이 연간 100괴(塊, 1괴=2,000장)로 이 마을의 연간 총생산량은 무려 2,000만 장에 달했고, 이로 인한 연간소득은 당시 시가로 10여 만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무렵에는 “양지 화지의 압두로 생산량이 급감”했던 사정을 감안하면 조선 후기의 생산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게 분명하다.

는 단순히 역서지만 공급했지만 나중에는 이들과 함께 역서를 인쇄했고, 어느 시점부터는 아예 인쇄소를 마련하고 암암리에 대량으로 역서를 찍어서 전국 각지에 판로를 두고 공급했다. 대대로 한지를 초지(抄紙)해온 안성의 지장들은 국법에 어두웠을 뿐 아니라, 서울에서 온 ‘관원’들이 관상감에 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관상감의 역관으로 여기고, 의심의 여지없이 국가에서 필요해 역서를 인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과거의 일들이 안성에 거주한 주민들의 기억을 통해 구전되었고 이를 김태영이 기록으로 남겼다.

김태영의 전언을 이와 같이 새기면 안성판방각본의 방각기원과 관련하여 그동안 규명되지 않은 유의미한 연결고리를 찾게 되고 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보이게 된다. 대대로 백지를 초지해 역서지나 감시명지를 공급해오던 안성의 지장들로 하여금 방각본의 판각활동을 개시하도록 촉발시킨 것이 바로 이 맥락이기 때문이다.

기좌리판 역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제작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관상감에서 원판목을 가져와서 인쇄했다고 보긴 어렵다. 아마도 위에서 말한 계인(桂仁)이나 대부분의 위조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관상감의 초고를 몰래 베껴 적은 저본을 기좌리에서 새롭게 각판하여 인출했거나, 관상감의 간인본을 해책(解冊)한 후 이를 판하본으로 삼아 판각 인출했을까 분명하다. 이 경우, 판하본을 한 장 한 장 목판에 붙여 매 판마다 각판을 새로 해서 찍어냈을 것이기 때문에 인쇄출판의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게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책과 종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책의 판각인쇄가 재화를 창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종이 뜨는 일을 천직으로 여겼던 전대(前代)의 안성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기좌리판 역서의 제작이 담지한 더 중요한 의미는, 당시 역서를 판매용으로 방각한 것이기 때문에, 당대 지장들이 서책의 상업적 출판이라는 새로운 차원에 눈뜬 전환점을 마련한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안성판 역서의 인출은 당시의 기좌리 지장들에게 안성판방각본의 개관으로 나아갈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게 분명하고, 이로부터 안성판방각본이 기원했을 것임을 상정하는 데 유력한 논거가 된다.

역서의 사조, 특히 지방판 역서의 사각위조에는 조선 중기 이래 영리를 얻기 위해 민간에서 사사로이 찍어서 판매한 책, 곧 방각본(坊刻本)의

본격적 등장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 안성과 같은 지방에서 사조 역사를 찍어내 사인상매가 횡행한 배경에는 조선 후기 들어서 역사 수급의 불안정이나 시장의 왜곡으로 인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겠지만, 이 시기 방각의 보편화도 지방판 역서가 사인되는 온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서는 일회적으로 찍어내는 여타의 서지전적과 달리 매년 연례적으로 찍어내야 하는 책이다. '방각의 시대'라 할 조선 후기 들어서 보급된 서책들, 권(卷)·책(冊)·질(秩)의 다소나 대소를 막론하고 서지전적의 일회적 출판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역사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판각과 인쇄에 경험이 있는 기술자들과 종이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안성을 찾은 관상감 소속의 장색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인쇄 경험을 쌓은 전문적 인쇄장이었을 것이다. 이들과 작업하면서 안성의 지장들은 인쇄 기술을 전수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통이 후대에 이르러 '안성동문이신판' 고전소설 등 우리나라 방각본 3대 판본으로 위상이 매김된 안성판방각본의 개판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를 인쇄하는 데 동원 또는 참여한 기좌리의 지장 각수 발행자들이 역사를 인출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살려, 조선 후기 널리 인기를 얻어 수요가 많았던 '이야기책들'의 방각으로 나아갔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⁷⁹⁾

79) 이창현은 「안성지역의 소설 방각활동 연구」(2000)에서 안성판방각본 고전소설 판본들의 번개와 선행-후행 관계를 치밀하게 추적한 바 있다. 그는 이 연구에서 '안성동문이신판' 간기가 없는 토요본코(東洋文庫) 소장 20장본 『소대성전』이나, 김동욱본 3권본은 물론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이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에서 판목의 존재를 언급한 바 있는 2권본(프랑스 동양어학교 등 소장) 『수호지』가 1860년 무렵 안성에서 간행되었을 개연성이 높고, 「내훈」과 「내훈제사」가 합철된 대영박물관 소장 28장본 『진대방전』도 '안성동문이신판'을 찍은 방각소와는 다른 안성 소재의 방각소에서 개판한 것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그는 1860-1880년 무렵 동문이방각소 이외에 안성에서 방각활동을 수행한 제삼의 방각소를 상정한 것이다. 이창현이 '가칭 朴星七家'(필자는 이를, 박성철의 방각활동과 구분하기 위해 가칭 '안성 방각소'로 지칭한 바 있다)로 명명한 이(들) 방각소의 존재는 안성의 역사 인출 전통의 배경을 고려하면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견해로 보인다. 위에서 필자가 논증한 맥락을 헤아려보면, 동문이방각소 고소설들을 방각하기 이전 어느 시점(1860년 무렵?)에, 애초에는 역사 인쇄로부터 출발했을 것이나 그와 동시에, 또는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고전소설의 방각으로 이행했을 기좌리 소재 방각소(들)의 실체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맺음말: 역서 인쇄로부터 비롯된 안성판방각본의 개관 기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상감의 관원으로 일컬어진 관상감 소속 인쇄장들이 애초에는 역서를 찍는 데 필요한 역서지(曆書紙)를 구하기 위해 안성의 기좌리와 불현리에 찾아왔고, 어느 시점, 아마도 1766년 흥봉환의 조치로 인해 관상감 안에 인력소가 설치된 시점을 전후로 하여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역서의 사인(私印)을 시작했다. 그래서 김태영의 진술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이 위에서 필자가 논증해 보이고자 한 논점의 요지다.

과거부터 기전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안성은 입지적인 요인으로 인해 하삼도(下三道)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로 인해 전국의 물산이 집산했던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그런 까닭에 안성지역에는 장시를 배경으로 상업활동이 활발했고, 한지·유기·연죽·유혜(油鞋) 등을 중심으로 한 전통수공업도 성행했다. 이런 경제적·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 이후 기전(畿甸)의 대읍(大邑)을 이루며 중부 내륙의 요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서지전적의 간행과 관련한 문화지형으로 보면 “조선시대에 정부에서 시헌력 인쇄를 해오던 역사 깊은 곳”⁸⁰⁾임 예도 불구하고 안성은 인쇄출판의 변경이자 고도(孤島)나 다름없는 곳이다. 안성지역은 경판(京板) 방각본을 찍어낸 서울이나 완판(完板)의 전주, 달판(達板)의 대구와 달리, 서책의 간인 전통이나 경험이 많지 않은 탓에 방각본이 생산될 환경과 기반이 매우 취약한 곳이다. 필자가 다른 자리에서 논한⁸¹⁾ 소략한 실물 자료들처럼 안성지역에서 산출한 흑간의 산물을 고려하면 완전한 불모지였다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이것들은 사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생산된 것일 뿐더러 모두 조선 중기 이전의 전통에 속한다.

과거 조정에서 경서·농서·정법서·병서 등 행정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책을 널리 반포할 때 대개 감영이나 관아에서 복각(復刻)으로 인출한 사례가 많지만 안성지역은 관찬본을 판각해 인쇄한 경우도 거의 찾아볼

80) 「安城白紙生産」, 《동아일보》, 1938년 4월 12일자.

81) 김한영, 앞의 책, 47-67쪽 이하.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풍(文風)이 성해, 서원, 정사, 강당 심지어 서당에서까지 서원본을 찍어냈고, 문중이나 개인이 다투어 사각한 서책들이 널리 간인되었던 대구나 전주 지역과 달리, 개인문집의 사가판(私家版) 간행도 안성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사정⁸²⁾을 고려하면 조선 중기 이후 사실상 인쇄출판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들어서 『춘향전』을 위시한 십수 종의 고전소설들을 방각본으로 찍어냄으로써 비롯된 출판문화가 안성지역에서 화려하게 만개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막에서 장미꽃이 피어난 것과 진배없는 일이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19세기 후반 어간에 이르러 고전소설들을 방각하기 시작했는지,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지금까지 전혀 규명된 바가 없다. 상리(商利)에 밝은 중상주의적 기풍과 수공업이 흥융한 안성지역의 문화전통이 작용한 점을 부인할 수 없으나, 그것만으로 방각본의 출현을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게 분명하다. 필자가 이 글에서 안성판방각본의 개관기원으로써 역서의 인출 전통을 추적한 것은 그런 의문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안성에서 역서를 찍었다면 찍어낸 책이 역서이니 만큼 간인지(刊印地)나 개관 주체를 표시한 판권지나 간기를 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실물 자료를 통해서 안성판 역서의 간행 내역을 확인할 방도가 없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판방각본의 기원이 역서 인쇄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전거라 할 수 있다. 안성지역에서 유래한 여타의 사료나 전통과는 그 성격이 판이한 기좌리판 역서의 출판이 방각본 안성판본의 개관 기원에서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 배경으로 작용했음이 명약관화한 까닭이다.

82) 「수고」, 『출판과 인쇄』, 119.

참 고 문 헌

『畿甸營事例冊』,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安城邑誌及邑事例冊』, 『朝鮮王朝實錄』, 『海東竹枝』.

김동욱, 「방각본에 대하여」. 『동방학지』 제11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70.

김태영, 『안성기략』. 동아인쇄주식회사, 1925.

_____, 「秋水 金台榮 述 安城文化今昔觀」(未刊行 手稿).

김한영, 『안성판방각본 판본고찰: 조선 후기-일제강점기』. 참빛아카이브, 2012.

_____, 『안성의 인쇄출판전통과 안성판방각본』. 참빛아카이브, 2013.

김향숙, 「조선시대 책력의 간행과 판본」.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김혁, 「역서의 네트워크: 왕의 시간과 일상생활」. 『영남학』 제18호, 2010, 249-291쪽.

성주덕 저, 이면우·허윤섭·박권수 역, 『서운관지』. 소명출판, 2003.

안성군지편찬위원회 편, 『안성군지』. 안성군, 1990.

우정임, 「16세기 후반기 방각본의 출현과 책패의 활약」. 『역사와 경계』 76권, 부산경남사학회, 2010, 68-106쪽.

이은성, 『역법의 원리분석』. 정음사, 1985.

이창현, 『경관방각소설 판본 연구』. 태학사, 2000.

_____, 「안성지역의 소설 방각활동 연구」. 『국문학연구2000』, 태학사, 2000.

정성희, 「장서각 소장 역서에 대한 고찰」. 『장서각』 6집, 2001, 179-208쪽.

_____, 「조선 후기 역서의 간행과 반포」. 『조선시대사학보』 23집, 2002, 117-146쪽.

허윤섭, 「조선 후기 관상감 천문학 부문의 조직과 업무-18세기 후반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국 문 요 약

안성판방각본은 경판 완판과 더불어 우리나라 방각본(坊刻本)의 3대 판본으로 일컬어진다. 아울러 최근 들어서 고전국문학, 서지문헌학, 판본출판학 등 관련 분야의 여러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발견본을 포함하여 20여 종을 헤아리는 비소설 류 판본은 차치하더라도, 최대 14종 17판본으로 추정되는 안성판방각본 고전소설은 완판이나 경판과는 다른 이판으로서의 희소가치를 갖고 있으며, 판본 연구나 텍스트 분석 등에서 국문학 연구의 기초자료로 주목되는 값진 자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안성판방각본의 기원과 유래를 밝혀 보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안성지역은 전통적으로 사실상 인쇄출판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지역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방각의 시대'라 할 수 있는 조선 후기에 들어서 『춘향전』을 위시한 십수 종의 고전소설을 방각본으로 찍어냈다. 이로부터 비롯된 출판문화가 안성지역에서 화려하게 만개한 것은 사막에서 장미꽃이 피어난 것과 진배없는 일이다. 인쇄출판의 전통이 미미한 지역의 환경에서 어떻게 19세기 후반 어간에 이르러 고전소설들을 방각하기 시작했는지,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지금까지 전혀 규명된 바가 없다. 상리(商利)에 밝은 중상주의적 기풍과 수공업이 흥융한 안성지역의 문화전통이 일정 부분 작용한 점을 부인할 수 없으나, 그것만으로 안성판 방각본의 출현을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게 분명하다. 이 글이 안성판 방각본의 개관 기원으로써 역서(曆書)의 인출 전통을 추적한 것은 그런 의문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안성판방각본의 남상(濫觴)이 지방판 역서의 인출 전통에서 기인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문헌과 기록, 증언을 검토해 상고했고, 이를 체계화하고자 했다. 그런 측면에서, 후행 연구자들이 안성판방각본의 전 면모를 고구 추찰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참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투고일 2013. 3. 2.

심사일 2013. 3. 25.

게재 확정일 2013. 5. 8.

주제어(keyword) 방각본(*banggakbon*, or privately printed books), 역서(calendar), 인쇄 출판(printing & publishing), 안성(Anseong)